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158 발의연월일: 2024. 9. 23.

발 의 자:황정아·강준현·윤건영

박홍배 • 박지혜 • 김문수

송재봉 · 오기형 · 이연희

허성무 • 전진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를 비롯한 성적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건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에 따른 2차 피해뿐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를위한 사회적 비용 역시 급증하고 있음.

하지만 텔레그램, 디스코드, 엑스(구 트위터) 등 해외플랫폼들이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방지에 미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외 정보통 신서비스제공자들의 책임 역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삭제·접속차단 등의 의무가 부여되는 청소년보호책임자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를 갖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2

조의3제1항 및 제44조의9제1항).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을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가 5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의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또는「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 중 청소년유해정보가 유통될 우려가 높은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4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을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가 5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의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

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 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 중 다음 각 호의 정보가 유통될 우 려가 높은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 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지정 등) ①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전년도말 기준 직전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5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 비스 부문의 전년도(법인의 경 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 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또 정하여야 한다. 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 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 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가통 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및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서 비스 중 청소년유해정보가 유 통될 우려가 높은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② ~ ④ (생 략)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 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u>해당하는</u> 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 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 (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 지 책임자) ① ----------전년도말 기준 직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 자가 5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 신서비스 부문의 전년도(법인 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 한다)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 형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 중 다음 각 호의 정보가 유통될 우려가 높은 서 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